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「주차장법 제4조」에 따라 주거지역 중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비율 이하인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·관리함에 있어 주차관리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주차문제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리 요건, 대상 및 절차를 신설  
(안 제1조의2)
- 나.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내역 및 사업예산 우선지원 근거 신설  
(안 제1조의3)
- 다.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절차 신설(안 제1조의4)

## 3. 개정근거

- 가. 주차장법 제4조 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
- 나. 주차장법 제4조의2 (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·관리계획)
- 다. 주차장법 제4조의3 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의 해제)
- 라.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-7700(2008.05.30)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·운영계획통보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8.08.14 ~ 09.04)결과, 특이사항 없음

나. 서울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10.09)

다.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1부

